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조례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소위원회 회의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함(안 제3조 및 제7조).
-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함(안 제4조).

□ 근 거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부칙 제1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조 례 안 : 덧붙임

□ 예 산 조 치 : '95.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참 고 자 료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현행)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위원 의정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

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